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 역사 속 언론

당대사의 기록은 정직한 언론활동

/ 특별기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의 위기?

2015
12

Vol. 186



달 개 비 꽃



고향 울밑 어디서나 피다지는 꽃이 있다
헤어지고 오던 날 남겨 둔 하늘처럼
유난히 동맥이 파란 몸매 아윈 그 아이

소꿉놀이 지치고 흠담아래 주저앉아
그렇지 도란도란 눈도 멀고 귀도 멀던
살며시 단발머리에 얹혀주던 청보라

희미한 옛 시간도 꼭 쥐면 물이 들까
꽃 속에 있던 아이 어디에도 없는데
부르면 나올 것 같아 어린 날의 달개비꽃

유재영

- 1973년 시 박목월, 시조 이태극 추천으로 문단에 나옴
- 한국문학평화포럼 부의장, 충남시인협회장 역임.
현재 동학사, GREENHOME, GREENCOOK, INVENTION 대표
- 중앙시조대상, 이호우문학상, 편운문학상, 가람상, 한용운시인상, 최계락문학상 등 수상
- 시집 『한 방울의 피』, 『지상의 중심이 되어』, 『고욤꽃 떨어지는 소리』, 『와온의 저녁』
시조집 『햇빛시간』, 『절반의 고요』, 『노티나무 비명 碑銘』, 4인집 『네 사람의 얼굴』, 『네 사람의 노래』 등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pacblog.kr

twitter.com/pac_news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facebook.com/pacnews

Contents

2015 December Vol.186

- 04 역사 속 언론 당대사의 기록은 정직한 언론활동
- 06 문화가 산책 클래식 강국으로 가는 길, 콩쿠르와 그 이후
- 07 古典名句 개관사정 蓋棺事定
- 08 신 동의보감 갱년기 장애
- 09 상담노트 여배우의 하소연
- 10 특별기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의 위기?
- 12 조정후기 미디어에 비친 검사와 신청인이 된 검사
- 13 위원회 뉴스·위원동정
- 14 BOOK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미디어와 인격권」창간
- 15 조정중재사례 / 독자마당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5년 12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4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당대사의 기록은 정직한 언론활동

하루의 역사는 신문, 조선의 역사는 사초에 있었다.

신문에 보면 취재 기자들의 생명력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역사의 현장에서 정론을 전한다는 사명감이 오롯이 녹아 있는 것이다. 그다지 등반 경험이 없는 기자가, 현장의 생생함을 전하기 위해 8,000m급 에베레스트 산악 등반에 참여하기도 한다. 현대사의 모든 사실이 신문에 있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 이유이다.

조선시대 사관의 사초에도 당대사의 사실이 그대로 들어 있다. 시정의 득실과 행동의 선악이 있는 그대로 서술되어 만세에 전해지도록 하였다. 이들이 작성한 사초를 근거로 치란 흥망의 자취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군주의 잘잘못과 재상들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 현실 정치의 선악을 살필 수 있었다. 사관의 직필을 바탕으로 당대사인 실록의 편찬이 추진된 배경이기도 하다.

조선의 사관들은 유교사관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보고 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하는 춘추필법의 역사의식, 즉 후대에 역사적 교훈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견지하

고 있었다. 권력에 아첨하지 않고 직필하겠다는 사관의 기개는 하늘에 닿을 정도였다. 사관의 선발 시 친가 4대조까지 살펴 비리를 저지른 조상이 없거나, 처가까지 살펴 허물이 없는 인물을 선발하였다. 이들의 의식이 형성되었던 뿌리까지 살피겠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사관들은 역사적 평가를 내리는 데 매우 신중했다. 역사 서술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사실 그 자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독자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고 작성자의 의견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방식에도 모았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실록을 읽는 이들은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살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고,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다. 조상의 잘못 여부까지 살펴 허물이 없는 사람만을 사관으로 선발하였고, 이들에게 역사의 기록 임무를 맡겼던 것을 볼 때, 당시 지배층들이 역사를 얼마나 무서워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권만을 쫓는 현 세태에, 조선 사관의 기록 행위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권력의 풍향에 노심초사하는 복지부동의 태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비리를 저지르다 걸려도 돈을 벌었으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 기초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행태 등 우리들의 현 세태에 대해, 이 땅에서 살다간 조상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조선왕조실록은 당대사의 보고(寶庫)

조선왕조 건국의 주인공들은 건국 직후부터 유교 문화의 보급·확산과 사서의 편찬을 통하여 건국의 당위성 확보에 노력하였다. 즉 고려시대의 청산과 새 왕조 건설에 따



른 사상 체계의 확립, 사서의 편찬·보급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편찬된 사서의 하나가 실록이었다. 그런데 필화의 우려도 있고, 현 군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대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군주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는 실록을 어떤 사람들이 편찬했을까? 실록의 내용 중에 칭송하는 글만 있거나, 권력에 아부하는 내용만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록을 한 번 읽어 보라. 그 안에는 선왕에 대한 비판은 물론, 정치권의 힘 있는 인사들이 상세하게 평가되어 있다.

이러한 실록의 편찬 원칙은 오직 한 가지, 철저한 비밀주의였다. 누구도 실록청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사 내용을 물을 수 없었으며, 편찬관들 역시 실록청 밖으로 편찬과 관련된 어떠한 논의 내용도 유출시키면 안 되었다. 사관이 작성한 사초와 실록의 기사 내용을 누설할 경우, 당사자의 처벌은 물론이고 아들과 손자까지 관료로 진출할 수 없었다. 해당 군주대의 모든 역사 사실이 빠짐없이 기록되었던 실록의 편찬이 철저한 비밀주의였지만, 기록된 내용에는 어떠한 비밀도 없었던 것이다.

조선 사관의 탄식. '너희는 왜 실록을 만들지 않는가?'

유교는 다른 어떤 사상보다도 역사 기록을 중시하였다. 유교적 역사의식이 강했던 동아시아 여러 왕조들은 역대 왕들의 기록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모두 실록을 편찬했다.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교적 답변은 역사를 통해 후대의 평가를 받고 동시에 현재의 삶 속에서 후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신을 상정하지 않는 대신 종교적 경건성이 담긴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절대 권력자인 왕을 견제한 것이다.

지나간 일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으려면 역사는 공정하게 기록되어야 했다. 그런데 공정한 역사 기록을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권력이었다. 거울은 비뚤어지거나 깨지면 사물의 형상을 제대로 비출 수 없다. 역사 기록 또한 이와 동일하다. 권력에 굴하지 않

고 공정하게 역사를 기록하려는 자세가 유교적인 역사의식의 기본 정신인 것이다.

또한 유교적인 역사의식에 의한 평가는 현재의 교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후세에 영원히 전해지는 것이었다. 역사적 평가의 영원성은 절대 군주인 왕에게조차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 모조리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진다는 사실에 초연할 수 있는 군주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록의 정확성과 평가의 영원성 및 교훈성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군주나 관료들은 현실 정치 운영 과정에서, 무분별한 권력의 행사를 자제하였다. 다시 말해 왕이나 대신들의 권력 남용 등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의 하나가 사관의 기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록은 그 자체로 현실 정치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언론활동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도 최고 통치권자의 언행 일체가 기록되고, 이것이 당대사로 정리된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민심을 이반하는 행태 등은 사라질 것이다. 국민을 기만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 역시 없어지리라 확신한다.

가치를 지닌 지식이나 기술을 기록으로 남기면 국가와 후손들의 재산이 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꾸준히 기록된다면, 이를 통해 미래의 바람직한 좌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식은 꾸준한 기록에 의해 축적되고 널리 활용되기 때문이다. 실록을 만든 조선의 사관들이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희는 왜 실록을 만들지 않는가? 당대사를 기록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예리한 언론활동이거늘, 너희는 왜 후손을 생각하지 않는냐고.



클래식 강국으로 가는 길. 콩쿠르와 그 이후

임지영(바이올린, 1995년 생)의 벨기에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소식이 올 여름을 달구더니 며칠 안 가 이탈리아에서 문지영(피아노, 1995년 생)의 부소니 콩쿠르 입상 소식이 날아왔다. 그리고 조성진(1994년 생)이 폴란드 쇼팽 콩쿠르에 입상하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세계 3대 콩쿠르에 속하는 퀸엘리자베스, 쇼팽, 차이콥스키 콩쿠르 중 한 해 동안 두 개를 석권한 셈이니,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인 2215년에 서양음악사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2015년은 한국연주자들이 유럽의 주요 콩쿠르를 휩쓴 해였다.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임지영, 부소니 콩쿠르의 문지영, 그리고 쇼팽 콩쿠르의 조성진. 한국은 더 이상 클래식 음악의 변방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국이 되었다.”

지금 추세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내년 2월에 조성진이 출연하는 콘서트의 티켓은 오픈한지 50분 만에 2500석이 매진되었다고 하니, 이제 피아노 학원들이 너도나도 ‘조성진 피아노 학원’이라는 간판을 다는 일만 남았다.

▶ 콩쿠르, 정치적이거나 인간적인 음악의 장

스물 한 살의 조성진이 2015년의 한국을 뜨겁게 달구었다면, 1974년의 한국을 뜨겁게 달군 스물 한 살의 청년이 있었다. 현재 서울시향 예술감독 정명훈이다. 그는 1974년 러시아에서 개최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입상하며 한국을 ‘신나는 쇼크’ 상태로 몰아넣었다. 귀국한 그를 위해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카퍼레이드가 벌어졌다. 당시 정명훈은 러시아 본국의 스타니슬라프 이고린스키와 공동 2위를 했다. 2011년 피아노 부문에선 손열음이 2위에 입상했고, 조성진이 3위에 입상했었다.

지금이야 한국의 인지도가 여러 모로 높아졌지만 1960·7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 어디를 가든 무명국 출신의 서러움을 온 몸으로 체감해야 했다. 인종·성적 차별은 물론이고 무명국 출신 등 모든 점이 악조건으로 작용했다. 지금도 세계 콩쿠르 현장을 가보면 자국의 음악가를 보호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늘 있



는데, 특히 ‘1위없는 2위’, ‘1위없는 3위’, ‘공동우승’ 등의 입상 타이틀은 ‘1위’를 자국의 청년에게 주지 못했을 때 붙는 타이틀인 경우도 있다. 사실 과거에는 콩쿠르의 입상은 커녕 참가조차도 힘든 경우가 많았다. 차이콥스키 콩쿠르만 보더라도 정명훈의 누나 정명화(첼리스트)가 1962년에, 또 다른 누나인 정경화(바이올리니스트)가 1966년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참가하지 못했다. 출전 당시 정명훈은 미국 국적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 국적으로 적국인 소련에 가기가 힘들었기에 부득이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는 1967년 독일 레벤트리서 콩쿠르에 핀커스 주커만과 공동우승하면서 세계적 연주자로 급부상했다. 동양에서 온, 그것도 무명국 출신의 10대 소녀에게 상이 돌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당시 콩쿠르의 심사위원장이자 세계음악계를 주름 잡던 유대인음악가들의 대부분이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타인(1920~2001)은 정경화에게 한참 뒤져있던 핀커스 주커만에게 공동우승을 안기느라 비난을 받는 것도 감수했다고 한다.

음악가로서의 가능성을 시험치는 콩쿠르 참가자의 최종 목표는 입상이다. 그런데, 입상이 아니어도 꿈을 이루는 발판이 될 때도 있다. ‘건반 위의 구도자’이자 영화배우 윤정희의 남편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그렇다. 백건우가 15세 때 미국의 드리트리 미트로폴리스 콩쿠르에 참가했을 때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습하고 있는 그를 유심히 지켜본 한 남자가 콩쿠르 주최 측에 “백건우를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한다. 그가 내비친 관심 덕분에 백건우에게 명문 줄리어드 음악원의 입학과 장학금은 물론이고 명교수 문하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남자의 ‘말 한마디’로 백건우는 꿈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린 소년의 운명과 공부 환경을 바꿔놓을 정도로 강한 입김을 지닌 그 남자는 당시 뉴욕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던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었다. 백건우도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는 25년이 지난 후, 당시 콩쿠르 주최자였던 한 나 색슨 여사와 식사를 나누다가 알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에 베를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 카라얀을 이 지면을 통째로 할애하여 소개한 적이 있

古典名句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07

개관사정



요즘 사람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It ain't over till it's over)라는 말을 많이들 한다. 프로야구를 보면 9회에 대역전극을 펼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승패가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던 팀이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여 승리를 가져간다면 그 말만큼 좋은 표현이 없다. 영화와 드라마에서 스토리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한다. 마지막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역시 그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비슷한 고사성어가 있다. '개관사정(蓋棺事定)'이 그 말에 해당된다. 관의 뚜껑에다 못질을 하고나서 최종 결과를 따질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두보하면 당시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지만 그의 개인사는 전쟁으로 치닫는 국내 정치와 맞물려 불행하기 그지없었다.

두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친구의 아들 소혜(蘇僊)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시를 써주었다. 시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라는 말로 소혜의 관심을 끈다. 이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광경을 제시한다. 집들의 오통나무가 시들다가 죽었다. 나무가 생명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나무의 재질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잘 가공하여 악기를 만들 수 있다.

소혜의 관심을 끈 다음에 두보는 “장부개관사시정(丈夫蓋棺事始定), 군금행미성노옹(君今幸未成老翁)”이라는 시구를 건넸다. “사내대장부는 관의 뚜껑을 덮어서 일이 비로소 마무리가 된다. 그대는 지금 다행히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았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 속에 따뜻한 마음씨가 전해진다. 소혜가 세상을 저주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아직 끝을 말할 계제가 아니라는 점을 넌지시 비추고 있다.

연말이면 아무래도 자연히 “한 해 동안 내가 뭘 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뾰족한 일이 없으면 허무해지기 쉽다. 2015년의 연말은 한 해의 연말이니 평생의 연말이 아니다. 언론은 한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고뇌하고 실의에 빠진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기사를 찾도록 힘써야겠다. 고통을 나누면 아픔이 줄어들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길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는데, 번스타인은 카라얀의 세기의 라이벌로 음악사를 장식한 인물이다.

▶ 북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콩쿠르 입상

세계 3대 콩쿠르로 불리는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 벨기에의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그리고 쇼팽 콩쿠르 중 한국인 최초의 입상자는 누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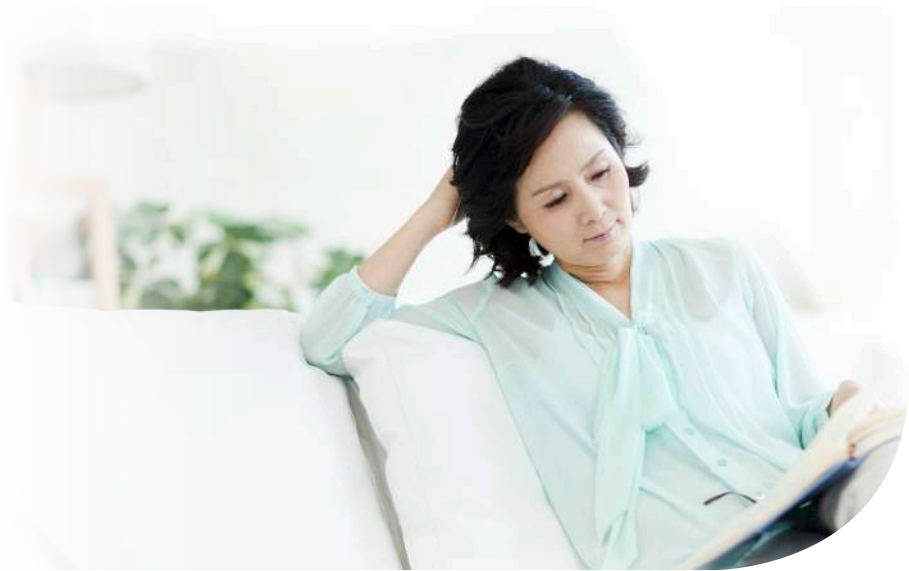
한국 전쟁 중인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러시아의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에서 열린 교내 연주회. 동양에서 온 학생의 격정적인 연주가 끝나자 당시 차이콥스키 음악원 교수였던 바이올리니스트 다비트 오이스트라흐(1908~1974)는 직접 그를 가르치겠다고 나섰다. 오이스트라흐는 1937년 퀴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한 이였다. 이 거장이 거뒀던 이는 북한에서 특별 연구생으로 초청받아 온 바이올리니스트 백고산(1930~1997)이었다.

백고산은 1957년 제1회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유명세를 떨쳤다. 하지만 북한과 경쟁을 일삼던 남한에서 그의 수상소식을 접할 수는 없었다. 해방 전의 신문자료를 보면 백고산은 여섯 살 때인 1936년부터 평양, 경성, 동경을 오가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명성을 날렸다. '기자는 다음에 백군을 소개해야 어린 "천재"의 출현을 기다리는 동포 여러분에게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동아일보 1936년 7월 10일자) 그때나 지금이나 세간에 등장하는 천재는 만인에게 기쁨과 뿌듯함을 주나 보다. 백고산은 이후 평양음악무용대학 등에 재직했고,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바이올린 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 사라진 천재가 더 많다

과거의 선배들이 '입상'으로만 그쳤던 콩쿠르에서 오늘의 젊은 음악가들은 '우승'의 타이틀을 따오고 있다. 1993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이 개원한 이후에는 '토종'이라는 단어도 생겼다. 어린 시절부터 해외 유학을 통하여 음악적 자양분을 흡수한 윗세대와 달리, 국내 교육만으로도 해외 콩쿠르에서 승부를 내고 있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런데 콩쿠르는 입상보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예술가로서 무르익음의 과정을 걸어야 하며, 때로는 원치 않는 슬럼프와도 마주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성진과 같은 쇼팽 스페셜리스트의 '화려한 등장'에 뜨겁게 환호하기보다는 천천히, 강풍과 열풍보다는 미풍(微風)의 마음으로 그를 지켜봐야 한다. 국제 유수의 콩쿠르에 수많은 한국음악가들이 입상했지만 사실 세간의 '반짝 관심'과 이후의 '무관심'으로 사라져간 천재들도 많기 때문이다.

갱년기 장애



갱년기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은 여성은 아무도 없다. 거울을 보면 어느새 입가에 주름이 가서 팔자주름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눈망울이 두툼해지고 턱은 사각턱이 되고 작은 입술이 두툼해지기 시작한다. 귀는 어둡고 눈은 침침해지고 치아는 출산 이후에 계속 나빠져 잇몸이랑 치아가 많이 손상되곤 한다.

갱년기 장애가 생기기 시작하면 누구나 고생을 하게 된다. 여성의 경우 뼈와 근육이 약해져가는 몸의 변화와 감정 및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할 수 없는 정신적 변화, 성기능의 약화라는 세 가지의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서양의학에서는 호르몬 보충요법(HRT, Hormone replacement therapy)이라 하여 호르몬제를 보충하여 갱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인체에 적절한 호르몬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인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호르몬을 보충해주게 되면 갱년기 증상으로 오는 여러 가지 병증들도 완화시켜 준다. 밤에 땀을 흘리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여성 장기 기능의 이상, 피로감 및 근육 약화와 기억력·집중력 감퇴, 기분이 침울하고 피부가 건조하고 주름살이 지며 심장 두근거리는 등등의 여러 병증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방의학에서는 몇 가지 처방들을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갱년기 증상들을 완화하는데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대개 피(血)가 부족하거나 혈액 순환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당귀작약산과 같은 혈액을 돕는 약으로 치료를 하고, 불안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면 가미소요산을 처방하며, 몸이 잘 붓고 순환기가 약하며 어혈의 문제가 있다면 계지복령환 같은 처방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이 세 가지 처방들은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처방이지만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방적 진단은 기와 혈과 담음(痰飲)을 볼 뿐만 아니라 체질을 음양으로 나누고 사상으로 나누어서 보게 된다. 갱년기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방적인 관점으로 신체 음양의 밸런스를 맞추는 치료를 해보는 것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다. 창과 방패의 관계처럼 우리나라에선 양방과 한방은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지만 두 의학의 힘을 합하여 치료하면 무척 좋은 효과를 보게 된다.

보통 야채나 과일 같은 자연이 주는 음식을 잘 섭취한다면 갱년기를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한 아몬드, 시금치, 고구마, 해바라기씨, 올리브오일, 다양한 생선 같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갱년기 증상이 훨씬 수월해진다. 다양한 야채나 과일들은 우리 몸의 밸런스를 효과적으로 맞춰주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무척 좋다. 갱년기는 아내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온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자녀들은 사춘기를 겪으며 부모에게 반항하며 방향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모두 서로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서로 간에 대화하기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여배우의 하소연

한 유명 여배우의 소속사에서 상담을 요청했다. 최근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에서의 연기에 대해 혹평이 쏟아지고 있단다. '발 연기', '학예회 수준' 등등의 극도로 연기를 폄하하는 표현 때문에 여배우는 크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소속사도 이러한 기사가 충분히 명예훼손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몇 년 전에도, 그녀의 당시 소속사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했었다. 그때는 영화였다. 거액의 개런티를 받고 출연한 영화가 생각만큼 흥행을 거두지 못하자 그 원인을 그녀의 부족한 연기력 탓으로 돌리는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은 것이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연기력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여배우와 소속사의 마음고생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과연 특정배우를 일컬어 '발 연기', '학예회 수준'이라며 비판하는 기사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까? 여배우에게 연기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충분히 기분이 나쁠 만하다. 다만 이 기사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법이 정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부터 살펴봐야 한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명예훼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기사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것을 전제로 한다.

기사는 그녀의 연기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녀가 그 드라마에 출연하여 연기한 것은 사실이며 그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도 않는다. 다만 연기력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인데, '발 연기', '학예회 수준'이라는 표현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같은 연기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자신의 기준과 잣대에 의해 평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가치판단과 평가를 표현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이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그 여배우의 눈물 연기를 보고 따라 온 적도 있을 정도로 감명 받았지만, 이 또한 주관적인 평가일 뿐이며 다른 누군가에게는 형편없는 연기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또한 그 사람 나름의 판단이니 말이다. 판례 역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는 그 표현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모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대해 <삼류>라고 표현한 것은 연주의 수준에 대한 평가적 의견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물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도가 지나쳐서 인신공격에 해당할 정도가 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모욕'이라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지 표현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발 연기', '학예회 수준'이라는 표현이 표현의 한계를 넘었는지 여부는 따로 판단할 일이고 그렇게 표현한 기사 자체는 법률이 정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많은 세월 대중의 냉담한 시선 속에서 고통 받았던 그녀로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보다도, 그녀의 연기력에 대해 폄하하는 기사가 가장 아플 것이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녀의 연기력을 폄하하는 대중의 혹평 중 상당 부분이 선입견과 편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며, 그녀로서는 이 억울함을 떨칠 수 있는 수단이 절실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부적절한 행위가 다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한 기사가 언제나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녀가 받았을 정신적 상처와 고통에는 깊이 공감하나, 그 기사가 법률이 정한 불법의 테두리 안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론사에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이다. 기사가 주는 정신적인 고통과 법률이 정한 불법행위 책임, 이 간극을 좁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대중스타로서 그녀의 몫이 아닐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의 위기?

지난 10월 13일 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구제제도'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1년 가까이 준비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언론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법안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들이 보도된 바 있고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에서도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사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세상에 내놓으며 어느 정도의 논란은 충분히 예상했다. 위원회 설립 이래 언론중재제도의 주요한 변화 시기마다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논란은 계속 있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론 자유와 국민 권익이라는 두 개 법익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언론중재제도는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지금까지와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개정안 내용 중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침해배제청구권의 도입, 기사댓글 관련 조정, 그리고 신생 미디어의 범위 등이다.

침해배제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사삭제요청이 급증하여 언론사들이 상시적으로 삭제요청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명시된 청구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걱정이지 싶다.

언론의 기사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곧장 삭제되는 것이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침해배제에 앞서 적절한 수준의 전제조건이 갖춰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격권 침해의 '중대성', 사생활의 '핵심영역', 보도의 '계속성' 등이 그것인데, 다른 법률에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이다. 또 이들 개념은 침해배제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일부에서는 '중대성'이나 '계

속성'과 같은 개념이 모호하여 침해배제청구의 남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기사에 대한 과도한 수정·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침해배제청구를 위한 요건이 다 갖춰졌다고 해서 기사삭제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전체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오보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될 것이고, 기사삭제 외에 기사의 일부 수정, 업데이트, 게시 중단과 같은 다양한 침해배제의 방안이 활용될 수 있다. 기사삭제 시에도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언론사 데이터베이스 안에 기사 원본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언론보도가 갖는 기록성과 공공성은 유지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무차별적인 접근성과 공개성만 제한되도록 일반적인 열람, 접근을 차단하면 되는 것이다.¹⁾

위원회가 침해배제청구를 조문화한 것은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30% 이상의 조정사건에서 기사의 수정이나 삭제의 형태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법조문에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 우리 대법원이 지난 2013년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을 이미 인정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게다가 언론조정중재제도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찾아가는 절차다. 언론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소한 문구나 표현이라 해도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침해배제청구권의 도입으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은 기우에 불과하다.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를 통해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다. 방심위에서 일반 댓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수의 댓글 관련 피해를 방심위에서 심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댓글은 일반 댓글과 조금은 달

1) 인터넷상에서 언론기사가 갖는 '기록성'과 '접근성' 개념을 구분하는 아이디어는 구분권 한겨레신문 사람과디지털연구소장의 것임을 밝힌다.

리 생각해야 한다.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은 일종의 언론사 지면의 확장이다. 오프라인 시대에 독자나 시청자들은 '독자투고'란이나 '옴부즈만'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면이나 시간은 한정적이었고 언론사에 의해 선정된 소수의 독자·시청자들만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이랬던 것이 인터넷 미디어 환경 하에서는 달라졌다. 기사 밑에 달린 댓글란을 통해 뉴스 수용자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되었다. 언론사에 의해 독점되었던 의견 게시의 권한이 독자나 시청자에게로 전환된 것이며, 따라서 기사댓글은 언론매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액세스 권한의 실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 피해구제의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기사댓글에 대한 피해구제 요청은 대체로 기사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과 더불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왕 기사에 대한 조정심리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기사댓글 관련 분쟁 또한 같이 처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렇게 하면 '기사는 언중위, 기사댓글은 방심위'라는 식으로 이중의 절차를 거치는 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로써 피해를 일회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분쟁 해결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댓글 게시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 또한 마련하고 있다. 댓글 관련 조정결과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재판으로 다룰 수 있는 여지까지 열어둠으로써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했다.

끝으로, 개정안에서 '유사 뉴스서비스'라고 명명한, 신생 미디어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논란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뉴스큐레이션서비스, 뉴스편집서비스 등과 같은 유사 뉴스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 매체에 의한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의 울타리 안으로 이들 신생 매체를 포섭해야 한다.

새로운 형태의 언론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

생할 가능성이 상존하다면 이에 대응할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유사 뉴스서비스인지 등에 관해서는 30여 년의 위원회 언론중재 경험을 살려 실무에 적용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피해자의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엄격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삭제·수정을 인정하고, 올바른 기사댓글과 편집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조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디어에 비친 검사와 신청인이 된 검사

〈부당거래〉, 〈범죄와의 전쟁〉. 자신의 욕망을 위해 검사의 지위를 남용하는 능글능글한 류승범의 얼굴, 혈연을 사서라도 검사에게 줄을 대고 로비하는 조직폭력배 최민식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이처럼 영화 속 검사의 모습은 기업의 스폰을 받고 총수일가의 배후를 봐주는가 하면, 조폭들과 기소 여부를 협상하기도 한다. 과연 누가 범죄인이고 누가 수사관인지 모호해진다. 형사사법권의 주체인 검찰이 온갖 비리와 커넥션으로 얼룩져 그려지기 일쑤다.

그도 아니면 어두컴컴한 조사실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악랄한 검사. 2013년故 김종학PD와 2015년故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검찰 조사 직후 자살하여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언론에서도 앞 다투어 검찰의 수사방식을 비판했다. 이 사건 조정에상기사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듯했다.

故 성완중 사건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고 나온 참고인이 다음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보도이다. 이에 유족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것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수사검사는 당시 구속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참고인에게 재산을 추징하겠다고 압박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익숙한 이미지가 그려진다.

신청인들은 현직 검사와 수사관이었다. 신청인들은 구속피의자 조사는 물론 참고인 소환 시에도 적법절차를 준수했고, 참고인에게 재산 추징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들은 이미 소속 검찰청 명의로 해당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공문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자 조정을 신청한 것이었다.

필자가 처리한 사건 중 법조인이 신청인인 경우는 처음이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들이 정보보도를 주로 청구하는 것에 반해, 반론보도를 청구했다는 점은 신청인들이 인용가능성을 바라고 있다는 간접함의 반증이기도 하다. 반론보도청구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조차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하고 있으



로, 반론권은 다소 넓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신청인들도 잘 알고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공무원은 언론의 비판과 감시에 대해 수인해야 할 범위가 넓다. 이에 신청인들의 적법절차 준수여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신청이유에 분명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심리당일 현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피신청인 측에게 문서로 확인되는 내용에 한하여 반론을 받아 줄 것을 제안했다. 다행히 언론사에서 이 점을 수용하였다. 이후에도 보도문안 작성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언론사에 반론권 보장을 설득했다. 이 때 만큼 신청인들이 반론보도를 청구한 점에 안도할 때가 있었을까.

다행히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됐다. 그리고 반론보도문이 게재되었다. 이후 신청인으로부터 고맙다는 메일이 한 통 왔다.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에 대해 적혀 있었다. 영화나 보도를 통해 그려지는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그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와 같은 회사원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잔뜩났다. 미디어에 등장하는 소수의 검사들과 달리, 신청인들과 같이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검사들이 많으리라고 믿는다. 아울러 그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위원회 뉴스
—
NEWS

중재위원 연수 실시



위원회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2015년도 중재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서울 8개 중재부와 지역 10개 중재부 등 전국의 중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 중재위원들은 대량사건 처리 조정례(조재연 위원, 서울제1중재부), 복제글·댓글 관련 피해구제(이기우 위원, 서울제5중재부), 기사어뷰징 관련 피해구제방안(홍문기 위원, 경기중재부), 지사체와 지역언론간 조정례(김선남 위원, 전북중재부) 등 각 중재부별 조정 사례 및 조정노하우 등에 대해 발표를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장의 "ICT생태계 진화에 따른 뉴스 플랫폼의 변화"에 대한 특강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피해구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전쟁 참전·지원국 언론인 내방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한국전쟁 참전국과 지원국, 개발도상국 등 8개국 언론인들이 지난 11월 9일 위원회를 방문했다.

관훈클럽과 한국언론

진흥재단의 해외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은 위원회에서 언론피해구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으며, 심리실 등을 견학했다. 대부분 현지 기자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위원회 조직 및 운영, 언론조정중재제도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위원동정
—
COMMISSIONERS

신임 중재위원 3명 위촉

11월 22일자로 신임 중재위원 3명이 위촉됐다.

중재부	성명	현직
대전중재부	송중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경기중재부	한기봉	(전)인터넷한국일보 대표이사
전북중재부	진태호	변호사

ASEAN 회원국 언론인, 위원회 방문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언론인 30여 명이 지난 11월 19일 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브루나이 타임스 소속 기사는 브루나이에서 인터넷 사용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언론사에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댓글란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의 댓글 운영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해 궁금해 했으며, 말레이시아 스타미디어 그룹 소속 기사는 악성댓글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위원회 양재규 교육콘텐츠팀장은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해 언론사가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위원회에서도 기사댓글로 인한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창간

—언론법제영역 연구 활성화 기대—



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학술지「미디어와 인격권」을 창간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언론법제 분야의 주요 현안을 진단하고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학술지 창간을 준비해왔다.

언론계 종사자, 언론법제 전문가, 언론분야 관련 학회원들의 관심 속에 다수의 논문이 투고되었으며, 이후 언론학회 및 법조계의 석학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부터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2편의 기획논문과 5편의 연구논문이 선정되었다.

이번 창간호에서는 디지털 중심으로 정보 유통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언론의 개념

과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인격권 보호〉를 기획논문 주제로 삼았다. 「미디어와 인격권」 편집위원회는 뉴스생태계의 환경 변화에 따라 언론피해구제의 영역을 디지털뉴스 중개자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연세대 윤영철 교수의 「디지털시대 언론피해구제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와, 신생 뉴스플랫폼에 대해 현 미디어법 체계에 따라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류정호 심의운영팀장의 「디지털 뉴스미디어 법적 지위 부여의 한계」 등 두 편의 논문을 기획논문으로 선정했다.

또한 '미디어 액세스(Media Access)권'의 개념으로 언론중재제도의 활용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미디어 액세스권 확보방안으로서 언론중재제도의 활용실태와 개선방안」(김영주 경남대 교수, 박창문 경남대 강사),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연예인들의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인격권 침해시 준거법결정의 원칙을 살펴본 「중국 국제사법상 미디어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준거법 결정」(김현아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재산권의 사상적·경제적·법적 성격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의 특성을 다룬 「재산권이론으로 본 퍼블리시티권의 특성에 관한 연구」(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원), 방송의 공정성 심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방송의 공정성 심의의 효과성 제고 방안」(신상민 방통위 공익법무관), 그리고 판례를 기반으로 대법원 심사 기준의 법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공적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단기준의 법적 의미」(이수중 언론중재위 기사심의팀장) 등 다섯 편이 연구논문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위원회는 국민들의 인격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언론법제분야의 연구 영역을 넓히기 위해 학술지 수록 논문 전문을 온라인(<http://www.pac.or.kr>)에도 공개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언론법제영역의 학술진흥을 선도하기 위해 「미디어와 인격권」의 한국연구재단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남승균 연구팀 차장)

보도에 당사자의 입장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보충적 반론보도 필요성 인정, 직권조정결정

A 종교신문은 종교계 사회복지관의 한 간부가 임산부 직원 B를 겨냥해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한다'는 성차별적 발언을 했고, 복지관이 이 발언을 문제삼은 계약직 직원 C의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것은 '보복성 인사'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복지관은 해당 발언은 직원 간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임산부 직원 B에게는 기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특별휴가 지급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 등 직원 B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직원 C의 계약만료는 복지관 보조금 동결과 예산 부족에 따른 것으로 해당 사안과 무관하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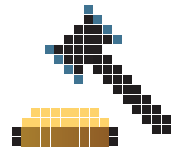
중재부는 반론권은 보도와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수용되어야 할 권리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 보도에 신청인 복지관의 주장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보충적인 반론보도가 게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보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심의 반론보도를 게재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충분한 취재 후 사실에 기반한 보도였다고 주장하며 조정안을 거부하여 중재부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다수의 법원 판결 중 일부만을 인용한 보도, 반론으로 직권조정결정

D 방송사는 한 부부가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의 팔을 꺾는 등 시비를 벌인 혐의로 수년간 재판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증거자료로 제출된 시비 과정의 동영상상을 통해 해당 경찰관의 과장된 행동이었음이 밝혀져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인 해당 경찰관은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부부 중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한 3건의 재판에서 2건은 부부의 유죄가 확정됐고 오직 1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되었으나 이 역시 검찰이 상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부부에게 유리한 1건의 무죄 판결 내용만을 인용보도 함으로써 본인과 전체 경찰관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정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해 결정이 확정됐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김보경

11월호 상담노트 '얼굴없는 사진과 초상권'을 읽고, 초상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초상권은 얼굴만 가리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초상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도 더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인들도 초상권을 침해받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태완

11월호 역사 속 언론 '조선시대 백성의 언론'을 읽고 왕이 절대권력인 조선시대에도 백성들이 억울한 피해나 불이익에 대해 호소하는 언론창구인 신문고 제도나 격쟁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내용에 제한이 있는 등 완벽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나마 백성들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괜찮았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임금의 한 마디가 법처럼 여겨졌던 왕조시대에도 일반 국민이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공감 블로그 오픈



pacblog.kr **NEW**



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3010, 3100, 3110
-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